

연번	시설현황			위탁체현황		위탁체 선 정	비고
	시설명	소재지	보육 정원	위탁체명 (위탁기간)	원장		
6	옥 계 어린이집	시흥대로86길 20 (독산2동)	79	(개인) 유 수 안 (' 18.11.20.~ ' 23.11.19.)	유수안	6월	구소유
7	슬 기 어린이집	한내로 69-54, 주공아파트 1402동 101호(독산1동)	20	(개인) 이 은 미 (' 18.12.01.~ ' 23.11.30.)	이은미		구소유
8	별 마 루 어린이집	독산로94길 17 (독산3동)	90	(개인) 송 현 정 (' 19.03.01.~ ' 24.02.29.)	송현정	11월	구소유
9	캐슬아이 어린이집	벚꽃로 30 금천롯데 캐슬골드파크 2차(독산1동)	49	(개인) 우 문 희 (' 19.03.01.~ ' 24.02.29.)	우문희		관리동
10	해 맑 은 어린이집	독산로35길 15-6 한백아트 101호(시흥1동)	20	(개인) 김 기 숙 (' 19.03.01.~ ' 24.02.29.)	김기숙		가정 전환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1) 위탁기간 : 5년
- 2) 위탁업무

가)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
나)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

(교육·영양·건강·안전·부모에 대한 서비스·지역사회와의 교류)

다) 운영시스템(CCTV등), 어린이집 관련 서류, 개인정보처리업무 등 수행

다. 위탁체 선정방법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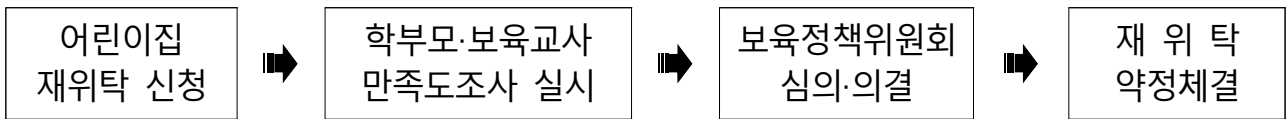
- 1) 선정방법 :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

< 심사기준 >

-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【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재위탁)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】
-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【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】
- 서울시 【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 지표 평정 매뉴얼】

- 2) 선정시기 : 2월, 6월, 11월

3) 선정절차



4) 선정기준

-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80점 이상
-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필수지표 9개 중 7개 이상 충족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- 2)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4. 관계법령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관 계 법 령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제13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1.3.18, 2014.12.30., 2021.11.16>

제14조(위탁계약)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1.16.>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끝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, 2021.11.16.>

④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

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, 2021.11.16.>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알리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11.16.>

제17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16> [전문개정 2020.12.31]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개정 2016.7.18.> [전문개정 2020.7.17]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